

2020년도 제3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32억 8백만원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3,208	3,208	0	0
일반회계	3,208	3,208	-	-
세외 수입	경상적	73	73	-
	임시적	3,135	3,135	-
보조금	-	-	-	-

2. 세 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41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639억 5백만원 대비 0.4%(2억 5천 8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64,951	63,905	64,163	△788	258	△1.2%	0.4%	
행정관 리	소 계	64,951	63,905	64,163	△788	258	△1.2%	0.4%
	행정운영경비	276	276	276	0	0	-	-
	사업비	64,675	63,629	63,887	△788	258	△1.2%	0.4%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서울시NPO지원 센터 운영	2,493	2,493	2,451	△42	△42	△1.7%	△1.7%
지역사회 주민생활 서비스 연계사업	-	-	300	300	300	100%	100%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검토

- 금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신규)”에 3억원을 증액하고,
 -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4천 2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세출	총 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내 용
			64,163	63,905	258	
	서울시NPO 지원센터 운영		2,451	2,493	△42	○ 민간위탁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인건비, 사업비 감액 ◦ 인건비 중 재수당 (246백만원→235백만원) △11 ◦ 사업비 - NPO참여예산제 지원 선정 후 잔액 △6 - 정책연구 중 국외여비 전액 (101백만원→76백만원) △25
	지역사회 주민생활 서비스 연계사업		300	-	300	○ 코로나19이후 지역사회내 연대와 자생력 강화로 지역의 안전망 구축 민간경상보조 사업 추진 ◦ 민간경상보조금 300 - 인건비 140,846천원 (상근비, 단순인건비) - 사업비 159,154천원 (공론장, 워크숍, 홍보, 서비스지원비, 사무용품 구입, 교육비 등)

가.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신규)

- 동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성장한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돌봄SOS센터 등)와 연계를 통한 주민생활 통합서비스(건강, 보건, 의료, 주거, 먹거리, 영양, 육아, 안전 등)를 제공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로 편성(민간경상사업보조 3억원)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00,000	(x-) 0	(x-) 3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300,000	(x-) 0	(x-) 300,000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건비 = 140,846천원
	-상근 인건비 = 132,948천원 2,462,000*6개월*3명*3지역
	-단순(조사원)활동비 = 7,898천원 10,530*5시간*5명*5일*2회*3지역
	○사업비 = 159,154천원
	-서비스지원비 = 54,000천원 10,000원*100회*6개분야*3개월*3지역
	-공론장 = 24,000천원 2,000,000*4회*3지역
	-워크숍 = 12,000천원 4,000,000*1회*3지역

	-홍보비(인쇄물, 영상물제작 등) 5,000,000*2회*3지역	=	30,000천원
	-소규모 물품구입 및 리스 비용 2,000,000*3명*3지역	=	18,000천원
	-기타 교육, 회의비 등 7,051,100*3지역	=	21,154천원
	증감사유		
○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서비스 연계,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등 사업직접수행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 동 사업 추진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1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조직을 공모(컨소시엄)로 선정(3개 지역)하여 보조금을 지원 하려는 것임.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0.7~12월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조직 ○ 사업수행주체 : 민간조직 ○ 추진방법 : 공모사업(민간보조사업) ○ 사업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대상 사업을 가진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 의지가 있는 단체(컨소시엄)을 공모선정 - 심사를 통해 3개 지역에 대한 단체(컨소시엄) 선정, 보조금 교부및 사업시행 - 지역수요조사, 제공서비스 등 사전현황 조사 - 민간조직 현황조사 및 통합 협의체 구성 기반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 행정(SOS센터, 찾동 등)과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생활서비스 제공

- 동 사업은 근거,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 및 사업 중복성 여부, 추가경정 예산 사업으로 편성할 만큼의 사업의 긴급성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 추진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11항은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동 조례가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1.>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근거로 동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사업 추진은 아닌지 여부와
- 동 조례가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작용하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둘째, 지나치게 많은 네트워크 구축사업, 연대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조직”의 컨소시엄을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셋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이미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36개월 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인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지원” 등에 8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1) 예산>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운영 = 48,660천원
	- 시민협력플랫폼 자문 및 지원단 회의 6,310,000 = 6,310천원
	- 시민협력플랫폼관련 성과평가 회의 5,350,000 = 5,350천원
	- 시민협력플랫폼 성과공유(3년차) 7,000,000 = 7,000천원
	- 시민협력플랫폼 활동사례서 제작·배부 30,000,000 = 30,000천원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지원 = 47,740천원
	- 보조금 심의위원회(20개구) 7,860,000 = 7,860천원
	- 사업설명회 및 예산 집행 지침 교육 8,720,000 = 8,720천원
	- 민민협력사업 자문 및 지원단 회의 24,160,000 = 24,160천원
	- 민민협력사업 성과공유회 7,000,000 = 7,000천원
증감사유	
○ 지역사회혁신계획 활성화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1개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참여 자치구 확대(총19개 자치구 예정)로 운영비 증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 운영비에는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운영	

- 1) 자치구별 민-관 협치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한 공공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사업임.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비용이 포함됨), 사업 실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성과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와 모니터링 비용, 지역의제 발굴 및 협치실행 평가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 자문 수당 등을 반영함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 평가 및 활용사례서 제작 등 ○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 운영 :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 추진 자치구 증가로 공모 선정 및 컨설팅 지원 비용 등이 증가함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400,000,000 = 400,000천원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500,000,000 = 500,000천원
	증감사유	
	○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 :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의 민간 컨소시엄 참여수요 확대(8개→10개) 및 단계별 사업 운영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증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시민협력 플랫폼 지원 500,000,000 = 500,000천원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300,000,000 = 300,000천원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2,200,000,000 = 2,200,000천원	
	증감사유	
	○ 3년 한시사업인 시민협력플랫폼의 2020년 완료로 예산 지원 종료.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자치구의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2021년 참여예정인 양천구 제외) 전환으로 지원금 감소	

〈 시민협력플랫폼 〉

❖ **정의** :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개방성·과정 중시)

- 시민주체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와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36개월 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사람(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공간 : 사업 시작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확보
- 사람 : 민간단체와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역 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자치구 시민 주체의 소통·협력 촉진, 지역사회 공공문제 해결 촉진
- 지역 내 풀뿌리단체, 중간지원단체(조직), 지자체 등의 연계망 확대·조직화
- 시민 주체의 자립을 위해 최대 3년간(36개월)의 지원을 거쳐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 조직 설립 및 운영

- 서울시NPO 지원센터마저 연대(컨소시엄)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NPO참여예산제 개요>

추진목적

- NPO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사회 공동의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함으로써 활동환경을 개선하고, 단체 간 연대와 호혜를 강화
- **개별단체가 다루기 어려운 분야,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임**

사업개요

- 사 업 명 : NPO참여예산제
- 추진기간 : 2020년 3월~12월
- 사업대상 : NPO 및 공익활동가(컨소시엄 구성, 개인·모임 포괄)
- 지원내용 : 총 6천만원 이내

○ **선정결과 (총3개)**

(단위 : 천원)

번호	팀명	프로젝트명	지원금액
1	코로나19타파연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위기 시 시민사회 대응체계 구축방안 - 시민사회 관점에서의 사회적 재난 재평가, 사회적 재난시 시민사회의 활동 드러내기, 해외사례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시민사회 영역별 재난활동 공유, 정책토론회	20,000
2	오감만족예산학교	감성충만 예산학교, 나를 표현하며 배우는 예산 - 기존 단순 정보제공방식의 교육의 한계와 행정주도의 성과중심 예산교육을 이미지를 활용한 참여형 워크숍을 적용	18,549
3	서울시민연대	2020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 -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현황 조사, 풀뿌리 역량강화 방안 모색, 풀뿌리단체 네트워크 자원 강화 방안 제시	18,450

- 결국 동 사업을 통해 어떤 서울시민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검토보다 사업 방식인 컨소시엄 구성과 공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넷째, ‘민간경상사업보조’의 1개 지역당 세부산출기초를 살펴볼 때, 선정된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지원수당(비)’ 지급 등의 혜택 제공은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 방식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세부산출 근거>

- **사업비 산출(안) * 1단계 추진 (20년 3차 추경예산(안))**

– 소요예산 : 300백만원(3개 지역 × 100백만원)

<1개 지역 산출기준(안) >

- ① 인건비 : 46,949천원
 - 상근인건비 : 44,316천원(3명×2,462천원×6개월)
 - ※ 시간당 생활임금(10,530원), 1일 8시간, 월만근 시 기준 : 서울형뉴딜일자리 지침 적용
 - 단순조사원 인건비: 2,632천원(10,530원×5시간× 5명× 5일× 2회)
- ② 사업비 : 53,051천원(공론장, 워크숍, 홍보, 서비스 지원수당, 사무용품 구입 등)
 - 공론장 8,000천원(2,000천원* 4회), 워크숍 4,000천원(4,000천원*1회)
 - 서비스 지원수당 18,000천원(10천원× 100회× 6개사업 × 3개월)
 - 홍보비(인쇄물제작, 영상제작 등) 10,000천원(5,000천원×2회)
 - 사무용품 구입 및 물품리스 6,000천원(2,000천원×3명)
 - 기타 교육비 등: 7,051천원(자문회의(수당), 교육비 등)
 - ※ 사업세부지침 및 단체선정이후 산출기준(안) 조정 가능

– 세부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인건비’²⁾ 편성이 50%에 육박하고, 나머지 50%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p>「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17. 9. 25.</p>	<p>「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19. 11. 16.</p>	<p>「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 3. 30.</p>
<p>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 (법 제 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u>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 (법 제 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u>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u>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p>	<p>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 (법 제 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u>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u>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p>

‘사업비’이며, 공론장(2천4백만원), 워크숍(1천2백만원) 등은 지난 제2회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공론장, 워크숍 등)을 감액 조정하고 있음에도 신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러한 항목으로의 증액 편성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산출기초〉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 경상 사업 보조	C인건비	= 140,846천원
	-상근 인건비 2,462,000*6개월*3명*3지역	= 132,948천원
	-단순(조사원)활동비 10,530*5시간*5명*5일*2회*3지역	= 7,898천원
	C사업비	= 159,154천원
	-서비스지원비 10,000원*100회*6개분야*3개월*3지역	= 54,000천원
	-공론장 2,000,000*4회*3지역	= 24,000천원
	-워크숍 4,000,000*1회*3지역	= 12,000천원
	-홍보비(인쇄물, 영상물제작 등) 5,000,000*2회*3지역	= 30,000천원
	-소규모 물품구입 및 리스 비용 2,000,000*3명*3지역	= 18,000천원
	-기타 교육, 회의비 등 7,051,100*3지역	= 21,154천원
	증감사유	
○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서비스 연계,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등 사업직접수행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 한편,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 ‘서울 사회서비스원’, ‘지역복지관’ 등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거나,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 ※ 돌봄SOS센터는 주민의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별 돌봄 SOS센터 설치(하반기 전 자치구 확산)하려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5억 8천 3백 만원을 증액하여 148억 7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비제도권 중심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일회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동안 자발적, 자율적,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해 오던 공익활동들이 보조금과 연계되어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단체의 취지의 훼손 등의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최근 언론보도³⁾에 따르면, 민간 시민 단체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많고(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협찬에 의존, 정치단체·이익집단화 한 시민 단체, 명칭에서 ‘시민’ 떼는 것이 마땅해, 권력과 자본의 횡포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가 보조금 수령 등으로 관변단체화 할 우려, 세금에 기생해 제 이익 챙기는 건 아닌지 그 말과 행동을 깊이 의심하고 따져봐야)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⁴⁾ 임을 감안해 볼 때,

3) 경상일보 2020.6.8. “시민단체, 정치단체, 이익집단”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799>

이데일리 2020.6.10.

[기부금 투명하게]③"회계 무지한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도 극소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5800408&mediaCodeNo=257&OutLnkChk=Y>

중앙일보 2020.6.9.

시민단체가 정부 돈·요직의 통로가 된 비정상 사회

<https://news.join.com/article/23796853>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개입이나 관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의 보조금 매칭 비율 강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공익 활동이 자생력과 자주권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서울시NPO 지원센터 운영

-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발전과 민관협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시 NPO 지원센터” 운영 예산 24억 9천 3백만원(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인건비’ 및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취소 및 축소 운영에 따라 4천 2백만원(인건비 1천1백만원, 국외여비 2천5백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451,174	(x-) 2,493,147	(x-) Δ41,973
사무관리비	(x-) 10,000	(x-) 10,000	(x-) 0
민간위탁금	(x-) 2,441,174	(x-) 2,483,147	(x-) Δ41,973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	-------------

4) 연합뉴스 2020.6.8.

문대통령, 시민단체·음해세력에 동시 경고장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8125400001?input=1195m>

민 간 위 탁 금	○인건비 △10,970,000원	=	△10,970천원
	○사업비 △31,003,000원	=	△31,003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NPO지원센터 국외업무여비(25,153천원), 불용예산 일부 인건비(수당) 및 사업비 감액		

○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동 센터는 ‘국외여비’는 감액 조정하지 않다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임.

- 동 센터의 국외출장 계획은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전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 연수(독일)” 였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바, 상시적, 관행적으로 ‘민간위탁금’ 중 ‘국외여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심사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책연수(년1회)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전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 연수(독일)

- 특히 동 센터는 지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시에 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원하는 등 ‘국외여비’의 불성실한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목적에 맞는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20년도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23.1%이며,

- “NPO상담소” 사업과 “활동의 기술발굴 및 공유지원”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 “권역NPO 지원체계 기반 조성”사업(1.3%), 정책연구(1.4%) 등 코로나 19의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들도 집행실적이 과도하게 부진한 것은 아닌지 검토와 함께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NPO지원산업박람회, 컨퍼런스” 사업은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은 0.5%(1백만원) 수준인바,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행사의 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인 경우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사업비 집행 현황〉

(2020.5.31. 현재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총계		1,098,688	253,830	23.1%
조직지원		230,418	117,431	51.0%
사업설명회	’20.1.~’20.5.	8,300	8,278	99.7%
조직변화 지원사업	’20.1.~’20.12.	88,564	65,056	73.5%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20.1.~’20.12.	92,708	44,097	47.6%
NPO상담소	’20.1.~’20.12.	40,846	0	0%
활동가지원		138,953	61,204	44.0%
활동가연구지원사업	’20.1.~’20.12.	79,861	53,840	67.4%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20.1.~’20.12.	7,030	0	0%
활동가역량의맵구축	’20.1.~’20.12.	52,062	7,364	14.1%
공익생태계 활성화		377,973	4,543	1.2%
NPO지원산업박람회. 컨퍼런스	’20.1.~’20.12.	260,000	1,170	0.5%
대외협력	’20.1.~’20.12.	28,073	2,173	7.7%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20.1.~'20.12.	89,900	1,200	1.3%
시민사회성장지원		351,344	70,652	20.1%
NPO참여예산제	'20.1.~'20.12.	79,343	36,694	46.2%
정책연구	'20.1.~'20.12.	76,980	1,101	1.4%
홍보	'20.1.~'20.12.	49,610	9,034	18.2%
정보아카이브	'20.1.~'20.12.	54,481	6,504	11.9%
NPO입주·협업공간조성	'20.1.~'20.12.	90,930	17,319	19.0%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	'20.4.~'20.12.	-	-	-
공간 및 전시 지원	'20.1.~'20.12.	-	-	-

-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동 사업에 대해 감액의결을 하였으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출되지 않은 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의 범위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삭감은 시장의 권한(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편성된 예산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가감한 당초 예산 사항을 포함하여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설사, 의회의 예산 의결권이 시장이 제출한 범위의 예산으로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이 하나의 완결된 안건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안 제출 내역을 살펴보면, 추가로 경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경정하지 않은 본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하여 예산안이 완결된 하나의 안건임을 증명하고 있는바,

다. 기타 예산 감액 검토 필요 사업

① 공론, 토론회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편성된 공론, 토론회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 내역은 없음.
- 동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이후 집행 부진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이 감액된 것은 불필요하고 특정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행사성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향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예산 편성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공론, 토론회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사업 집행실적>

사업명	2020년 기정예산액 (천원)		집행실적 (4월 15일 기준)	집행실적 (5월 31일 기준)	2차추경 증감액	3차 추경 증감액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 비	-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201,400	3,000 (4.20일 기준 195,500/ 업체 계약 후 선금 집행 완료)	8,000	-	-
	행사 운영 비	- 시민회의 토론회 개최 200,000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행사 운영 비	- 정책포럼 40,000	0 (업체로 선정 완료 5월 중 집행 예정)	0 (업체계약 및 신청 완료로 6월 중 134,800천원 선금 집행 예정)	-	-
		정책토크 프로그램 운영비 25,000				

사업명	2020년 기정예산액 (천원)		집행실적 (4월 15일 기준)	집행실적 (5월 31일 기준)	2차추경 증감액	3차 추경 증감액
민주시민교육 추진	민간 위탁 금	- 민주시민 포럼 15,940	0 (하반기 집행예정)	0 (하반기 집행예정)	-	-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무 관리 비	- 온오프라인 공론장 300,000	0 (하반기 집중 집행 예정)	0 (하반기 집중 집행 예정)	△100,000	-
		- 민주주의서울 성과 보고회 40,000	0 (2020.12. 집행예정)	0 (2020.12. 집행예정)	-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사무 관리 비	- 시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운영 지원 100,000	0 (하반기 집중 집행 예정)	0 (하반기 집중 집행 예정)	△30,000	-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무 관리 비	- 토론회 및 공론, 기타 워크숍 등 운영 55,000	0	0 (하반기 집행예정)	△40,000	-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282,240	486	6,145	△136,099	-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무 관리 비	- 시민참여예산 홍보, 위촉식, 토론회 등 55,000	12,000	14,032 (홍보영상 촬영 운영 자금 하반기 집행 예정, 토론회 11월 개최 예정)	-	-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 관리 비	- 협치체계 구축 199,300	17,624	27,351	△40,000	-
지역협치 활성화	사무 관리 비	- 지역사회혁신계획 활성화 운영 289,400	55,413	55,413	△5,000	-
행정-시민사 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사무 관리 비	- 서울사회협약 리더 십 민관공동 워크숍 10,000	0	0 (하반기 집행예정)	-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 관리 비	- 마을공동체 교육 20,000	0 (2020.5. 집행예정)	0 (코로나19로 대면교육 취소, 온라인교육물 제작 예정)	-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사무 관리 비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담당자 교육 15,000	2,945	2,945	-	-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